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34호로 2025년 11월 7일 최인순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획·제작·
유통·소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보조금 지원 및 위탁(안 제4조)
- 라.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 마. 준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및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5.11.7.~11.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창조·유통·소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	제명	내용
제1조	목적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활동 지원
제2조	정의	탄소중립,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예술 단체의 정의를 규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실천 의무 문화예술행사 발굴·추진-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이 어려운 문화예술단체에 필요한 시책 마련
제4조	보조금 지원 및 위탁	보조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친환경 소재 사용 문화예술 행사소품 제작- 그밖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제5조	지도 및 감독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 가능
제6조	준용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제7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타 법령, 조례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본 조례 따름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집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목표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¹⁾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각 지역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까지 탄소중립 정책은 주로 산업, 교통, 에너지 등 물리적 감축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전시, 공연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가치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영역임.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제정안에서 구청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